

—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4월 3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5월 7일

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포상금 지급신청 등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·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임.

다. 주요내용

- 징수 포상금 신청에 따른 대장비치증 “읍·면·동장”을 “포상금지급신청 부서의 장(읍·면·동장 포함)”으로 확대.
-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은 “매월”에서 “수시”로 하고
- 지급신청서서식의 제목 “월분 징수포상금신청서”를 “징수포상금신청서”로 서식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.

라. 참고사항

○ 타시군 정수포상금지급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○ 지방세입정수포상금지급조례의 포상금지급 부서 확대 및 신청일,신청서식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로서 타 법령과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